

□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

- (대상자) 원서접수일 현재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는 수험생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

구분	요건
국민기초생활수급자	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생계급여조건부수급자, 보장시설(사회복지시설)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
법정차상위계층	장애인연금 대상자, 장애수당 대상자, 자활근로 대상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,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
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	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
- (신청방법)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은 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납부 후 확인 절차를 통해 환불
 - 졸업생, 검정고시합격자, 기타학력인정자 및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원서 접수 시 아래의 증빙서류 중 해당서류 제출

구분	제출 서류
국민기초생활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법정차상위계층	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
	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
	자활근로자 확인서
	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
	차상위계층 확인서
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	한부모가족 증명서

※ 해당 증명서는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(2023.7.25.이후) 발급분부터 유효

□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

- (대상자) 천재지변, 질병, 수시모집 최종합격, 군입대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하나의 영역(과목)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
- (신청방법) 환불신청 기간('23.11.20.~11.24.) 내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환불신청서(접수처 비치), 신분증, 증빙서류를 제출 시 응시수수료의 60% 환불